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가단11485 손해배상(지)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균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득
변 론 종 결	2026. 10. 14.
판 결 선 고	2026. 11. 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6. 1. 16.부터, 피고 C은 2026. 1. 20.부터 각 2026. 11. 4.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형, 기계, 제조산업 등의 분야에서 복잡한 형상의 설계, 모델링 및 디자인, 제조 등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D(D,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계치공구제작업, 기계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선반과 밀링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의 일부를 가공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23. 12. 5.부터 2024. 4. 23.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E버전, F버전)을 복제, 사용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4. 11. 7.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 사용하여 원고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약4141),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관하여 피고 C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1개당 소매가격인 7,600만 원에 복제, 사용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수인 4개를 곱한 금액으로 3억 4,000만 원의 일부로 5,6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인 D 소프트웨어는 H, I, J, K, L, M, N의 7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듈의 라이선스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사실, 원고의 국내 총판은 거래처에 이 사건 프로그램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특정 모듈인 I 소프트웨어를 2024. 11. 1,200만 원, 2025. 1. 1,404만 원에, K 소프트웨어를 2024. 11.에 700만 원, 2025. 6. 819만 원에 각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프로그램의 패키지는 상당한 고가이나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에게 필요한 모듈별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과정에서 전체 모듈을 복제하였으나 모든 모듈의 기능을 사용할 목적이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대체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오래된 버전의 사용료가 하락하게 되는데, 피고들이 사용한 E버전은 1999년 출시되어 2003년에 단종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가격이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의 가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인 7,600만 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 1개에 대한 사용 허락이 있었다면 피고들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기존 이용계약 체결 사례, 개별 모듈의 구성과 가격,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횟수,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저작물의 개수, 피고 회사의 업태와 설치된 설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11-13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주식회사 B는 2026. 1. 16.부터, 피고 C은 2026. 1.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혜린